

제8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결정사항과 정책 시사점

서진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3460-1156)

이준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jwlee2@kiep.go.kr, Tel: 3460-1088)

차 례 ●●●

1. WTO 각료회의 개최 과정과 진행경과
2. 각료회의의 주요 결정사항과 평가
3. 2012년 DDA 협상 전망과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1년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각료회의의 결과 회원국의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3대 핵심의제에 대해 의장선언문이, 7개 일반의제에 관해서는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음. 또한 각료회의의 개최 직전에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평가와 러시아 등 3개국의 WTO 가입승인이 이루어졌음.
- ▶ 제8차 WTO 각료회의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둔 각료회의, DDA 협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시각 차이를 재확인한 각료회의,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수확 가능성을 열어둔 각료회의로 평가할 수 있음.
 -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된 금번 각료회의는 정부조달협정의 타결과 러시아의 WTO 가입 등으로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한 협상방식을 놓고 선진국의 복수국간 협상방식과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상호 불신도 자리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잠정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서 조기수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
- ▶ 2012년 DDA 협상은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수확을 위한 탐색적 성격의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전체 협상의제에서 조기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탐색하는 성격의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분야별로 복수국간 협상이나 또는 변형된 소규모그룹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WTO 기능강화 차원에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활동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 우리나라는 조기수확 움직임, 복수국간 또는 소규모그룹 협상추진 움직임 등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 특히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다자통상체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013년 예정)를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WTO 각료회의 개최 과정과 진행경과

가. 개최 과정

- WTO 라미 사무총장은 2011년 상반기까지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 6월, 제8차 WTO 각료회의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며, DDA 협상의 연내 성과도출을 강조
 -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2012년은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해임.
 - 이러한 상황에서 DDA 협상이 4월 DDA ‘분야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 채택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자¹⁾ 라미 사무총장은 12월 15~17일 제8차 각료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7월부터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을 위한 ‘12월 패키지(최빈개도국 패키지) 협상²⁾’을 추진
 - ※ 제8차 WTO 각료회의는 지난 2009년 제7차 WTO 각료회의(2009. 11. 30~12. 2,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1년 말에 개최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DDA 협상의 진전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합의 도출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최빈개도국 패키지’ 협상조차 회원국간 입장대립으로 타협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지난 9월부터 회원국들 사이에서 각료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DDA 협상의 무산 가능성과 함께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었음.
- 이에 라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은 DDA 협상의 표류를 막고, WTO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료회의에서 최소한의 성과도출을 위한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지난 11월 30일 일반이사회 (GC: General Council)에서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핵심의제를 도출함으로써 각료회의가 개최됨.

나. 각료회의 진행경과

- 제8차 각료회의는 공식회의(plenary session)와 비공식적 실무회의(working session)로 나누어 3일간 진행되었음.
 - 공식회의는 주로 회원국 수석대표들의 DDA협상 및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장이었으며, 실무회의는 같은 주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음. 그러나 실무회의에서 실제 논의된 내용은 공식회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1) 분야별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이후 협상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성한경 외(2011. 5. 13), 「DDA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0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2) 12월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서진교, 이준원(2011. 7. 21), 「DDA, 12월 패키지 논의동향과 정책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2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각료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3대 핵심의제와 7개의 일반 의제가 논의되었음.

- 3대 핵심 의제: 다자통상체제 및 WTO의 중요성, 무역과 개발, DDA 진전
- 7개 일반 의제: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부담 완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 식량안보, 지적권, 최빈개도국 우대, 소규모 취약국가에 대한 고려, 무역정책 모니터링
- 12월 15일: 공식 총회 개막 및 정부조달협정 타결 평가
- 12월 16일: 3대 핵심의제(다자통상체제와 WTO의 중요성 및 무역과 개발) 논의 및 러시아 WTO 가입승인
- 12월 17일: 3대 핵심의제(무역과 개발, DDA 진전) 및 7개 일반의제에 대한 논의, 사모아 및 몬테네그로 WTO 가입승인, 폐회식

■ DDA 협상과 별도로 진행되어 온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각료회의 개최 직전 타결되어 이에 대한 평가도 있었음.

- 정부조달협정은 1999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2월 14일 주요국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합의에 도달 하였음.³⁾
-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전체가 아닌 참여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2개국(EU를 27개국으로 계산)⁴⁾이 가입되어 있음.

2. 각료회의의 주요 결정사항과 평가

가. 주요 결정사항⁵⁾

1)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3대 핵심 의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 다자통상체제 및 WTO의 중요성: WTO내 기구(TPRB, DSB)⁶⁾의 활동 강화

- 규범에 기초한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 합의
- WTO 협정문의 이행과 투명성 강화, 무역조치 검토 등을 위한 WTO의 활동 강화
- 분쟁해결기구(DSB)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분쟁해결양해(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그 활동을 강화

3)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하 참조

4) 42개국은 미국, EU(27개국),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EFTA(4개국),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아루바(카리브해 섬나라) 등임.

5) Eighth Ministerial Conference, Chairman's Concluding Statement, WTO, WT/MIN(11)/11, December 17, 2011 참고

6) 무역정책감시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와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의미. WTO 조직도 참고(www.wto.org).

■ 무역과 개발: 무역개발위원회(CTD)의 작업을 통해 최빈개도국의 이익을 반영

- 개발이 WTO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관련 필요 작업을 무역개발위원회(CTD: Committee of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수행하여 차기 각료회의의 시까지 보고
- 면화 관련 홍콩 각료선언 11조⁷⁾ 의무이행 약속을 확인
-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중요성을 감안, 2011년 이후에도 해당 원조를 2006~08년 평균수준으로 유지

■ DDA 협상 진전: 다른 협상방식의 모색과 빠른 진전이 가능한 협상분야를 먼저 추진

- DDA 협상의 일괄타결을 위한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괄타결 협상방식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상당한 시각차이가 존재하여 가까운 시간 안에 DDA 협상 타결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DDA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되, 협상의 신속한 진전과 촉진을 위해 다른 협상방식(different negotiating approach)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
- 특히 일괄타결에 의한 전체 합의도출보다 빠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의 협상을 촉진

2) 7개 일반 의제에 대한 각료결정문 채택

■ 지재권 분야 비위반제소: 2013년까지 재연기

- 지재권협정문(TRIPS) 제62조는 비위반제소를 인정하고 있음⁸⁾
- 2001년 도하 각료선언에서 비위반제소 적용을 2003년 칸쿤 각료회의까지 연기하였고, 2005년 홍콩 각료회의와 2009년 제7차 각료회의에서 이를 다시 차기 각료회의로 연기함에 따라 이번 8차 각료회의에서 재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
- 지난 11월 18일 지재권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비위반제소를 2013년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11월 30일 일반 이사회에서 각료결정문으로 채택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차기 각료회의의 시까지 재연기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는 지난 1995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유예가 계속되어 왔음.
 - 1995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모라토리엄) 및 전자상거래 관련 작업계획 수립을 권고
 -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에서 DDA협상을 출범시키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결정사항⁹⁾을 채택

7) 홍콩 각료선언 11항은 면화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2006년까지 면화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DDA 이행시점부터 최빈개도국의 면화수출에 대해서는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하는 한편 면화에 대한 무역왜곡보조는 다른 농업보조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내용임.

8) 비위반제소란 특정 회원국의 조치가 비록 WTO 협정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이를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 2009년 12월 제7차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를 차기 각료회의 시까지 연장
- 2011년 11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재연장에 합의하는 각료결정문을 채택
- o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차기 각료회의 시까지 다시 연장하고 무역개발위원회를 통해 개도국, 특히 최빈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를 검토

■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부담 완화

- 도하 각료선언 42항은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2년 7월 일반이사회에서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지침을 만들기로 결정
- 2011년 11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요청 자제, 개발 정도를 감안한 양허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빈개도국 WTO 가입지침'을 각료결정문으로 채택

■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분야 의무면제(waiver)

- 서비스협정문(GATS) 19조 3항은 최빈개도국 특별대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3년 9월 서비스 이사회 및 2008년 7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빈개도국에게 서비스분야 의무면제(waiver)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09년부터 의무면제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결과 2011년 11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분야 의무면제 범위를 시장접근분야로 제한하는(단 서비스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 내용의 각료결정문을 채택

■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재권분야 협정 적용 유예: 차기 각료회의 시까지 재연기

- 최빈개도국은 지재권협정 66조에 따라 2005년까지 10년간 지재권 의무이행을 유예 받았음.
- 2005년 11월 지재권 이사회에서 동 유예기간을 2013년 6월말로 다시 연기
- 2011년 11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최빈개도국에 주어진 유예기간을 차기 각료회의시로 재연기하는 각료결정문을 채택

■ 무역정책 모니터링

- WTO 설립협정 부칙 3항에 따라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2011년 7월부터 제4차 무역정책검토회의를 통해 각료회의에 제출될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11월 30일 일반 이사회에서 무역정책검토기구의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음.

■ 소규모 취약국가(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에 대한 고려

- 2001년 도하각료 선언 35항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소규모 취약경제국의 무역상황을 검토하기로 합의
-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개발위원회(CTD)에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함.
- 2011년 10월 무역개발위원회에서 SVEs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 11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각료결정문으로 이를 채택
 -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소규모취약국가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고, 일반이사회는 그 진전사항과 기 권고사항 등을 차기 각료회의 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3) 정부조달협정

- DDA 협상과 별도로 지난 1999년 이래 협상을 계속해 온 정부조달협정이 타결되어 2012년 3월 조문화 과정을 거쳐 42개 가입국이 정식 서명할 예정
- 정부조달협정의 타결로 가입국의 양허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약 800억~1,000억 달러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WTO 사무국)

4) 러시아, 몬테네그로, 사모아, 바누아투의 WTO 가입

- 18년간 끌어온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이 종료되어 각료회의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
 - 1993년 6월 WTO 전신인 GATT 체제 아래서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년간 회원국과의 가입협상을 거쳐 마침내 2011년 12월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정식 승인됨.
 -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을 반대해 온 그루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러시아 WTO 가입의 최종 난관이 제거
 - 러시아는 2012년 3월 대선 이후 의회 비준을 거쳐 동년 상반기 중 WTO에 정식 기탁서를 제출할 전망
 - 다만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양허는 잠정적으로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음.¹⁰⁾
- 그 외 사모아, 몬테네그로, 바누아투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됨으로써¹¹⁾ WTO 회원국은 현행 153개국에서 157개국으로 확대될 예정

5) 기타

- 차기 각료회의는 추후 일반이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

10) 미국의 1974년 무역법 401조(일명 Jackson-Vanik 법안)는 러시아와 7개 구소련연방 국가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적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도 미국이 동 법안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킬 때까지 미국에 대해서만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양허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

11) 바누아투는 11월 30일 일반이사회에서 이미 WTO 가입이 승인되어 각료회의에서는 가입승인 절차 없이 일반이사회 결정사항을 재확인(take note of)하는 형식을 취함.

나. 평가

1) 최소한의 성과도출에 그친 각료회의

■ 이번 각료회의는 2011년 상반기 협상에서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을 위한 ‘최빈개도국 패키지’ 조차 합의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개최된 만큼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회의였음.

- 이에 따라 각료회의 개최의 필요성조차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WTO 다자통상체제의 유지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이 타협하여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바, DDA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음.

■ 그나마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타결된 정부조달협정과 러시아의 WTO 가입 등이 이번 각료회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임.

- 정부조달협정은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부조달시장의 하한선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양허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새로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신규 포함) 세계적으로 약 800억~1,000억 달러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었음.

○ 향후 중국 및 러시아가 정부조달협정에 참여할 경우 시장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복수국간 협정으로 향후 DDA 진전을 위한 협상타결방식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 가능

○ DDA 진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방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조달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향후 협상타결방식 논의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approach)방식이 더욱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각료회의 개최를 하루 남겨두고 협상타결 결과를 발표한 이면에는 153개국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여 합의도출을 시도하는 현행의 협상타결방식으로는 DDA 타결이 어렵다는 무언의 과시가 될 수 있음. 아울러 개도국에게 타협의 중요성(참여국간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 최종 타협)을 강조하는 무언의 압력으로서 의미도 존재함.

- 한편 러시아의 가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회의가 다소 상쇄되는 효과도 있음.

○ 20여 년에 가까운 장기 가입협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계 최대의 비회원국이었던 러시아가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WTO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계기

2) DDA협상의 진전방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현격한 시각 차이를 재확인한 각료회의

■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가까운 시일 안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 또한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협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협상방식으로는 DDA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며, 복수국간 협상방식이 DDA협상 타결의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임.
 -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형편이 되는 회원국끼리 협정을 발효시킨 다음 점차 여타 회원국으로 범위를 넓혀 다자화(multilateralization)하는 것이 DDA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다자통상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라는 시각
 - 반면 개도국들은 복수국간 협상방식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이라는 다자통상체제의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특히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선진국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분야만을 골라 먼저 발효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음.
 -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차이 이면에는 서로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

3) 그러나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에는 공감하며,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DDA 협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현격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WTO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WTO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와 분쟁해결기구(DSB)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함.
- 아울러 각료회의의 의장요약문은 DDA협상의 진전을 위해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촉진시키기로 하여 (Ministers commit to advance negotiations, where progress can be achieved) 향후 잠정 또는 최종합의가 가능한 분야의 조기수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¹²⁾

3. 2012년 DDA 협상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2012년 DDA 협상 전망

12) 의장성명서는 도하선언이 일괄타결방식에 의한 완전한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컨센서스에 기초해 잠정 또는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the elements of the Doha Declaration that allow Members to reach provisional or definitive agreements based on consensus earlier than the full conclusion of the single undertaking) 을 강조

- 2012년은 주요국의 대선 및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DDA 협상의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다만 2012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협상분야별로 조기수확이 가능한 내용을 탐색, 확인하는 수준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1년 7월에도 비교적 타협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던 ‘최빈개도국 패키지’ 협상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음.
 - 따라서 2012년 DDA 협상은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협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사전탐색 결과에 따라 DDA의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임.
 - 단, 조기수확 방안과 일괄타결원칙의 해석, 조기수확에 포함될 의제범위 등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빠른 시일 안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와 함께 새로운 협상방식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의 하나로 복수국간 협상이나 또는 이의 변형된 형태로 소규모 그룹회의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 준비기간에 그럴 의향이 있는 회원국끼리 서비스 분야 복수국간 협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특히 미국은 서비스협정문 제5조에 기초하여 복수국간 협상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호주 등 선진국들이 이에 동조하였음.
 - GATS 5조는 서비스 분야의 FTA 추진을 위한 조항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를 철폐할 경우 관련국간 서비스 자유화 협상을 용인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의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음.
 - 이에 대해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대표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즈니스 업계가 서비스 분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를 원하고 있어, 비록 공식적인 복수국간 협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분야에서 이해당사국끼리 소규모 그룹형태의 협상이 추진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나. 정책 시사점

-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를 사전 점검, 협상에 대비
 - 향후 DDA 협상이 전 협상분야에 걸쳐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함.
 - 그동안 추진해 왔던 FTA 협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수확 가능 분야를 사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할 필요

- 복수국간 협상 또는 소규모 협상그룹을 통한 논의에 대비
 -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방식의 모색과정에서 복수국간 협상방식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경우 복수국간 협상의 의무와 혜택 적용방식을 놓고 회원국간 이해가 대립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의 경우 기존 정부조달협정과 같이 협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에만 의무와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도국은 정보통신협정(ITA)과 같이 의무는 참여회원국으로 제한되는 반면, 혜택은 WTO 전체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극적인 타협안으로 현재 NAMA 분야별 자유화(sectoral)의 critical mass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음.

■ 무역정책검토키구(TPRB)의 활동 강화에 대비

- 향후 DDA협상의 진전과 함께 WTO내 여러 기구들의 활동 강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
- 특히 향후 국별 무역정책검토(TPR)가 더욱 엄격히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무역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각종 보조금제도의 WTO 규정 일치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국가별 무역정책검토(TPR)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이나 또는 경쟁국의 보호주의 성향 조치 파악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달협정 및 러시아의 WTO 가입을 활용

- 정부조달협정의 타결로 세계 정부조달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러시아와의 FTA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FTA 추진은 러시아의 WTO 가입 우선정책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위험요인 고려 때문에 진전이 없었으나,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제도의 투명성이 확립된바 이에 기초하여 FTA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러시아는 중국의 배후에 위치해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장기적으로 다자통상체제 약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FTA를 통해 WTO 양허수준을 넘는 시장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WTO 다자통상체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가치와 중요성은 여전히 큼.
- 규범에 기초한 다자통상체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압력이나 보복조치 등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최근 점증하고 있는 보호주의 확산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접근 차원에서도 다자통상체제 유지는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WTO 다자통상체제 약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다자통상체제에서 한국의 역할 제고 및 위상강화를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013년 예정)를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EP**